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3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최은석의원안)	3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73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나. 제안이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계약형태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동일함(단, 운용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함)(안 제91조의18제3항 신설).

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금액을 추징함(안 제91조의18제8항 개정).

다.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된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91조의18제14항 신설).

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봄(안 제91조의18제15항 신설).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최은석의원안)

현 행	최은석의원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제91조의18)	☐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 비과세 대상: -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 보호자적립금에 대한 증여세 * 가입자가 19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 최은석의원안 2025. 4. 11. 제출(의안번호 9737)

☐ 개정안은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① 가입자인 아동이 19세가 되는 날까지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② 보호자가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적립한 보호자적립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738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19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해당

아동 명의의 계좌(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고, 보호자는 월 20만원 이하의 보호자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아동은 19세 이후부터 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대표발의)과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구분	임광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만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지원 방식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적립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적립
정부적립금	월 10만원	월 10만원
보호자적립금	매월 10만원 이하의 금액	매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인출 가능 시점	18세 이후	19세 이후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불가 (아동의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출 가능)	좌동
정부적립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및 결정 철회 등	좌동

□ 개정안은 아동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¹⁾이 2024년 0.75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처럼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초자산의 형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세제혜택은 가처분소득이 높은 부모를 둔 아동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보호자적립금을 보다 많이 입금하는 가구일수록 이자·배당 및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커지는데, 아동이 성인이 될때까지 출금이 제한되는 계좌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가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 .

1)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계의 경우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흑자액²⁾이 없고, 2분위·3분위 가계의 경우도 자산구입이나 부채상환 등 고려 시 보호자적립금 납입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2025. 2/4)]

(단위: 천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 득	1,194	2,808	4,317	6,260	10,743
가계지출	1,480	2,337	3,310	4,829	7,425
소비지출	1,304	1,900	2,496	3,536	4,943
비소비지출	176	437	814	1,293	2,481
처분가능소득 ¹⁾	1,018	2,371	3,503	4,967	8,261
흑자액 ²⁾	-286	471	1,007	1,431	3,318

주: 1) 처분가능소득 = 소득-비소비지출 2)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통계청, 2025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2025. 8. 28.

특히, 증여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현행 증여재산 공제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과세 혜택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도입되어 혼인일 및 자녀의 출생·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함.

2)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통계청

둘째, 일정한 소득 요건 등 충족을 전제로 비과세하는 다른 자산형성 금융상품과는 달리 개정안은 모든 아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과세 저축상품간 수평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저소득 청년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소득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고령자³⁾,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적용하도록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적립금 지급에 따른 상당한 재정지출과 적지 않은 규모의 조세지출이 계속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장기적인 국가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은석의원안(만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만원 지급)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6.8조원(연평균 5.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임광현의원안(만 18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원 지급)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5.5조원(연평균 7.1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⁴⁾.

3) 2025년도 정부안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비하는 안이 제안됨.

4) 조세지출 규모는 해당 계좌 운용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소득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 곤란(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문 의 처
02)6788-5161